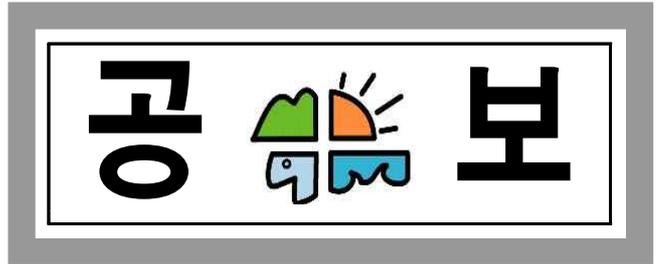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29호 2021년 6월 11일(금)

## 훈 령

-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2

## 고 시

- 대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6

## 입법예고

-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8일

속 초 시 장 김 철 수 인

속초시 훈령 제755호

###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승급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②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승급 제한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제1항”을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⑨ 공무원근로자 본인이 정년퇴직 할 경우 3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징계양정기준(제5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 은 후 다시 정직 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 은 후 다시 감봉 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 은 후 다시 견책 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 책
나. 공금 횡령·유용	해 고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 고	해 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부정청탁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 책
마. 기 타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 책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8. 직장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제5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 고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 고	해 고

## 대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규정에 따라 대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에 따른 편입토지 면적 정정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6월 9일

### 속 초 시 장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대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속초시 고시 제2019-40호, 2019. 5. 31.)

나. 사업위치: 속초시 도문동 산306-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대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식(2,000㎡)

라. 총사업비: 1,881백만 원

마. 사업기간: 2020. 11. ~ 2022. 6.(예정)

2. 설계도서의 열람장소: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총사업비	1,881	800	800	281	
국 비	940.5	400	400	140.5	
지 방 비	940.5	400	400	140.5	

##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정비구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및 필요 시 보강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기능유지

- 유지관리부서: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 7.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 8.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033-639-24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용지조서(변경) 1부. 끝.

【붙임】

편입용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유자	주소	비고
	시	동			면 적(㎡)		면 적(㎡)				
					지적	편입	지적	편입			
계					113,580	1,367	113,580	1,091			
	속초	도문	7-14	도	10,675	139	10,675	139	국 (기획재정부)		
	속초	도문	산306-1	도	2,578	382	2,578	382	강원도		
	속초	도문	산302	임	55,430	91	55,430	98	국 (산림청)		지적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속초	도문	산302-1	도	504	87	504	87	강원도		
	속초	도문	산301-2	임	44,393	668	44,393	385	국 (산림청)		지적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 일

#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업소운영 풍토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제정목적과 관련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1)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등 교육
  - 2) 교육시간은 연 3시간 교육
- 다.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 등 교육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8조)
- 라. 교육통지서 송부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마.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바.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사. 교육의 유예·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1) 유예: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

2) 면제: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3조)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연락처: 전화(033-639-2226, 2221), 팩스(033-639-2345)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33-639-2226, 22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

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속초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속초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등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각 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통장 임기 연장(2년→3년), 통장 결격사유 신설 및 해임요건 강화 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동 행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주민 자율의사에 의한 통장 선출이 안될 시 공개 모집을 통한 통장선출” 단서 규정 추가(안 제5조 제2항 제3호)

나. “통장임기 2년 ⇒ 3년” 규정 개정(안 제5조 제3항)

- (부칙)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통장 임명시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통장은 처음 임명, 3년 이상인 통장은 1회 연임, 6년 이상인 통장은 2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다. “통장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며, 사직 및 해임 등으로 새

로이 임명된 통장 임기에 대해 전임자 남은 임기 설정” 규정 추가  
(안 제5조 제4항)

라. “통장·반장의 해임요건” 강화(안 제5조 제5항 제6호~제9호)

마. “통장 결격사유 및 서약서 제출” 규정 신설(안 제6조)

바. “통장 임명 및 해임 시 보고” 규정 신설(안 제7조)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137, FAX 033-639-2590,  
전자문서 yaho220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통장의 임기 내에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통장 추천이 안 될 경우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며,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 물의 또는 논란을 일으켜 통장·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통장·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기타 이득을 취한 경우
8.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9. 개인사정 등으로 자진사퇴 하였을 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② 통장 후보로 신청한 사람은 범죄경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고) 동장이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통장 임명시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통장은 처음 임명, 3년 이상인 통장은 1회 연임, 6년 이상인 통장은 2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장·반장의 임명·해임)</p> <p>① (생략)</p> <p>② 통장·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p> <p>1.·2. (생략)</p> <p>3.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통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u>&lt;단서 신설&gt;</u></p> <p>4. (생략)</p> <p>③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와 제 14조에 의해 임명기간의 평가결과 우수자에 한정하여 연임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 할 수 있다.</p>	<p>제5조(통장·반장의 임명·해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p> <p>---. <u>다만, 기존 통장의 임기 내에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통장 추천이 안 될 경우 통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수 있다</u></p> <p>4. (현행과 같음)</p> <p>③ ----- 3년----- ----- ----- ----- ----- -----</p>

<신 설>

④ 통장·반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3.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생략)

<신 설>

④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며,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  
-----.

1. (현행과 같음)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6. 사회적 물의 또는 논란을 일으켜 통장·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통장·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기타 이득을 취한 경우
8.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9. 개인사정 등으로 자진사퇴 하였을 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통장 후보로 신청한 사람은 범죄경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 설>

제7조 · 제8조 (생 략)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동장이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 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각 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통장 심사기준의 통장 면접점수 비중 상향 등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동 행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통장 임기만료 해 활동평가 기준일 조정(안 제9조 제1항)
- 나. 통장 모집공고 시 자격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및 제출서류(서약서)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 다. 통장 심사기준표 정비(안 별지 제4호 서식)
- 라. 통장 후보자 서약서 서식 추가(안 별지 제8호 서식)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137, FAX 033-639-2590,  
전자문서 yaho220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활동내용을 1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속초시 ○○동 공고 제 호

# 통장모집공고

모집대상

- 통 명 : 제 통
- 관할구역 :
- 사 유 :

자격요건

-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 하는 사람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주민센터 내 비치)
- 자기소개서 1부
- 서약서 1부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공고기간 : . . . - . . .

접수기간 :

문의사항 :

○ ○ 동 장

## 심 사 기 준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 대 폰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비율)	점수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7년 이상 ~ 10년 미만	13		
	4년 이상 ~ 7년 미만	11		
	4년 미만	9		
2. 통장전담가능 여부 (25%)	겸직 없음	25		
	자유·자영업	21		
	기타	17		
3. 봉사활동 시간 (15%)	90시간 이상	15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속초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시간
	60시간 이상~90시간 미만	12		
	3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9		
	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6		
4. 행정기관 상훈 (5%)	장관상 이상	5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
	시장상 이상	3		
	기타	1		
5. 면접심사 (40%)	탁월	31~40		주민 신망도 및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21~30		
	보통	11~20		
	미흡	1~10		
<b>총 계</b>		<b>100</b>		
확인자	○○동장      ○○○ (서명)			

# 서 약 서

본인은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서류 및 통장 지원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해임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통장 지원자 ○○○ (서명)

○○동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통장활동의 평가)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활동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내용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p> <p><u>&lt;단서 신설&gt;</u></p> <p>② (생   략)</p>	<p>제9조(통장활동의 평가) ① -----</p> <p>-----</p> <p>-----</p> <p>-----</p> <p>----- .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활동내용을 1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